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!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,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 조례안은 그간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에
‘주소’와 ‘사업장’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되어
사업장만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
가능성이 있는바, 관내에 ‘사업장’을 둔 소상공인을
적용범위로 규정함으로써 「소상공인기본법」과
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」와 적용대상을
일치시키는 한편,

행정안전부·중소벤처기업부·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
○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살피주시고, 시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